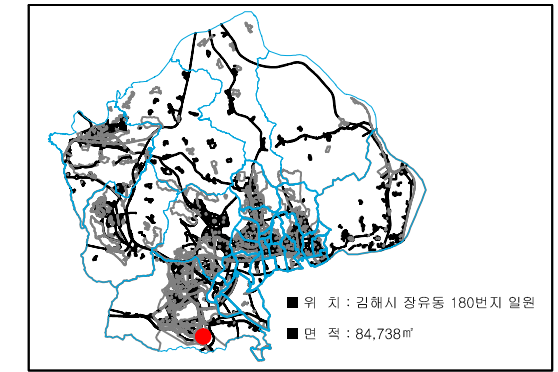


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도

Key Map



범례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지구단위계획
- TBL 가 구 번 호
- 획 지 번 호
- 건축한계선

허용용도	
불허용도	
용적률	최고높이
건폐율	최저높이

SCALE = 1 : 3,000



구분	입안권자		결정권자		
	작성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속					
직위					
직명					
성명					
확인인					

■ 공공시설용지

위치	구분	계획내용
B1-1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공공시설 1)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시설 2) 문화 및 집회시설 3) 의료시설 4)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5) 노인복지시설 6) 수련시설 7) 운동시설
	불허용도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· 70% 이하
	용적률	· 350% 이하
	높이	· 5층 이하
	배치	-
	영태	-
	색채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	건축선	· 건축한계선 : 1.5m(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)
	기타사항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
■ 준주거시설용지

위치	구분	계획내용
B1-B5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: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7,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의 건축물 용도
	건폐율	· 70% 이하
	용적률	· 350% 이하
	높이	· 5층 이하
	배치	-
	영태	-
	색채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	건축선	· 건축한계선 : 1.5m(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)
	기타사항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
■ 주차장용지

위치	구분	계획내용
A8-5, B2-3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: 주차장(준주거시설용지) / 주차장(단독주택용지) 「주차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 및 부대시설 주거전용건축물의 주차장용도외의 허용용도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제1종 근린생활시설 2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숙박업종이 있는 골목연습장, 장의사, 단란주점, 안마사술소 제외) 3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 4) 판매시설(상점에 한함) 5) 자동차 관련 시설(세차장)
	불허용도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· 90% 이하
	용적률	· 1,500% 이하
	높이	-
	배치	-
	영태	-
	색채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	건축선	· 건축한계선 : 1.0m(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)
	기타사항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
■ 단독주택용지(점포주택포함)

위치	구분	계획내용
A1-4, A8-10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3) 제1종 근린생활시설 4)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종모판테소, 장의사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사술소, 노래연습장, 옥외에 결빙을 설치하는 골목연습장 제외) ※ 점포주택 : 1층에 연방, 바닥면적 중 연면적 40% 초과 할 수 없음 (단, 2층 이하 건축물 연면적 50% 초과할 수 없음)
	불허용도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· 60% 이하
	용적률	· 180% 이하
	높이	· 3층 이하
	배치	-
	영태	-
	색채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	건축선	· 건축한계선 : 1m(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)
	기타사항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
■ 단독주택용지

위치	구분	계획내용
A5-7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불허용도 :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· 60% 이하
	용적률	· 180% 이하
	높이	· 3층 이하
	배치	-
	영태	-
	색채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	건축선	· 건축한계선 : 1m(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)
	기타사항	·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

